

1999. 10. 2.(토)  
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제천시 용역과 제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  
심사 보고서

총 무 위 원 회

#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(안)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9. 21 유 영 화의원외 5인  
나. 회부일자 : 1999. 9. 22  
다. 상정일자 : 1999. 9. 30 (제5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유 영 화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용역발주에 앞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여
- 무분별하거나 과다한 용역이 없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없애고,
-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 2명에 위촉직 위원을 (시의원 2명 포함) 각계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8인을 위촉,
-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,
- 안 제4조에 용역과제 선정시 사전심사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검토,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협의, 기타 용역과 관련한 심의 ·

조정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

-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방법을, 안 제 10조에 수당 및 여비규정을 두는 것입니다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태훈)

#### ○ 법적검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“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·권고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○ 행정적 검토

-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되고, 각종 계획과 대 단위의 프로젝트추진 등 전문 행정의 영역도 증대되어 가고 있어 부족한 인력대책과 요구되는 전문성 관계로 용역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.

따라서 무분별한 발주나 과도한 용역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본 조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.

- 다만, 날로 늘어나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 검토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겠음.

## 4. 질의답변 요지

### 가. 질의요지

- 제천시가 용역 발주한 사항 및 '용역과제심의위원회'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여부 ? (장기훈 위원)

### 나. 답변요지 (유 영 화위원)

- 제천시가 용역 발주한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시고, 특별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와 연관된 심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5. 토론요지 (반대토론자 : 민 경 환위원)

용역심의위원회에 의회의원이 참여하여 결정한 결과에 차후 의회 예산심의시 기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남발 가능성 있어 신설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겠음.

## 6. 심사결과

“ 표결하여 원안가결 ”

- 표결 결과 : 찬성 5, 반대 1.

## 7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(안) 1부. 끝.